

한국건강증진개발원-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

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환경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환경 확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기본원칙

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,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제3조 협력분야

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구 등 협력
2. 식생활 관리를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확산
3.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·보급
4. 학술대회,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국민건강증진 관련 정보 공유
5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

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
1.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2. 실무협의회는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5조 보안유지

1.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2. 양 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가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6조 협약기간 및 협약의 해지

1.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
2.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3.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,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 협약의 변경 등

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, 문서로 본 협약을 수정할 수 있다.

제8조 법적 권리 및 의무

1. 본 협약서는 제5조를 제외하고는 양 기관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2. 양 기관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기간을 명시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위와 같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3월 31일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

원장 조인성

조인성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처장 김강립

김강립